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00년 1월 8일

3. 제안이유

-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5895호 '99. 2. 8)되어 도로에 마을·주유소·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 기준·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이 조례에 의한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마을·주유소·휴게소 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을 지방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밖의 연결의 경우에는 교통안전·도로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안 제3조)
-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연결 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안 제4조)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의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안 제5조)
- 일정기준 이상의 곡선구간·경사구간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안 제6조)
-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방법, 시설별 가·감속차로 등의 설치기준, 연결로 등의 포장방법·분리대·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제4항 및 제7조 내지 제12조)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적용범위와 연결허가의 신청요령
- 지방도와의 무분별한 연결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연결허가 기준과 금지구간을 정하고, 연결로의 설치요령과 방법 등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